

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4고단36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
(명예훼손)

피 고 인 전 [REDACTED] ([REDACTED]-0000000), [REDACTED]

주거 서울 강남구 [REDACTED] ([REDACTED])

등록기준지 서울 강남구 [REDACTED]

검 사 임길섭(기소), 장대규(공판)

변 호 인 법무법인 탑

담당 변호사 박정익, 조영선, 이승연

판 결 선 고 2014. 8. 22.

주 문

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이 유

범 죄 사 실

피고인은 (주)KT의 직원으로서 2009. 9.경부터 (주)KT 노동조합 전임노조원으로 활동

하는 사람이고, 피해자 조태옥은 (주)KT의 직원으로서 (주)KT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2010. 4.경 해고된 사람이며, 김[REDACTED]은 (주)KT에서 근무하던 중 2013. 6.경 개인채무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한 사람이다.

피고인은 2013. 8. 8.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에 있는 KT 본사 노동조합 사무실에서, 사실은 위 김[REDACTED]은 개인채무 등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을 하여 산업재해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 김[REDACTED]의 장례식장에서 위 김[REDACTED]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로 처리를 해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, KT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(www.kttu.or.kr) 게시판에 '작작들 해라'라는 제목으로 '얼마전 직원 상 당했을 때 가보니 해고된 조모씨가 와서는 산재로 다 처리해 줄 것처럼 말하던데 사기 좀 그만 치쇼. 될걸 된다고 해야지. 상 당한 유족들을 상대로 사기나 치고. 그게 인간이 할 짓이 더냐.'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.

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1.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

1.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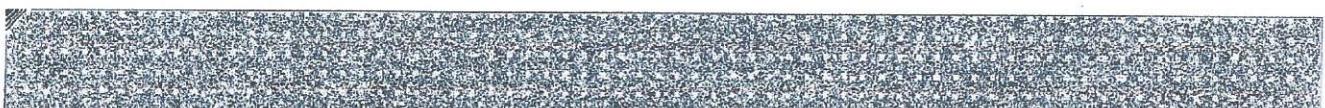
1. 조태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

1. 이[REDACTED], 이[REDACTED], 엄[REDACTED], 류[REDACTED], 이[REDACTED], 장[REDACTED]의 각 진술서

1. 인터넷 출력물

1. 각 녹취록

1. 수사보고(증거기록 1권 46면)

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(허위의 사실로 명예훼손한 점, 징역형 선택)

1. 집행유예

형법 제62조 제1항

1. 사회봉사명령

형법 제62조의2

피고인의 허위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

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. 살피건대,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,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에 기재된 사실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, 심[redacted] 또는 박[redacted]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, 심[redacted]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, 박[redacted]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김[redacted]의 장례식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장례식장에 참석한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산재 또는 보상을 언급하면서 유족한테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전화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,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목격하지도 아니하였고,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해들은 말과도 다른 사실을 게시하였으므로,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.

양형이유





온성출력용바코드

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점,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 표현을 사용한 점 등 참작.

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

임정택



등본입니다.

2014. 8. 25.

서울중앙지방법원

법원주사보 마지영

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